

〈논 문〉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특성과 효과적인 법적 보호^{**}

— 현행 저작권법과 유럽지침을 중심으로 —

丘大煥^{***}

I. 서론

이 글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있어서 배타적 권리설정에 의한 방법, 즉 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행 저작권법 및 이와 유사한 배타적 권리설정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유럽지침{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이하, 유럽지침)}¹⁾의 문제점을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특성에 입각하여 지적한다. 그리고 배타적 권리 설정에 의하여 공공의 영역에 있어야 할 정보와 데이터가 사유화 되는 것을 막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교육과 과학의 발전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는 과학, 법률, 교육 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과학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성

* 이 글은 필자의 두 글, 즉 “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창작과 권리**, 2005년 여름호(제39호)와, 서울대학교 BK 법학연구단이 주최한 2005. 10. 28. 「2005 국제심포지엄 한국법과 세계화」에서 발표한 “현행 저작권법과 유럽지침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6학년도 학술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助教授. gucci@snu.ac.kr.

1)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t para.17.

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통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는 사실들까지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는 입법은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을 방해하고 정보의 사유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작권법²⁾은 유럽지침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쫓아 배타적 권리설정에 의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방대한 데이터로 구성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CD-ROM 몇 장에 수십만 페이지의 정보를 담을 수 있을 만큼 데이터 저장 능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신속하게 데이터를 찾고 수정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발전에 힘입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능력도 향상되었다.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상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정보의 확산이 가속되었다.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저장하고 확산시키는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역으로 정보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통하여 사용하는 정보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생산한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도 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데이터의 제작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기여한다.³⁾ 데이터베이스 소유자가 제공한 기존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제작하는 사람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수집한 데이터에 기여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이것을 이용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적인 정보나 데이터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과정, 즉 지식의 순환⁴⁾을 통해서 데이터와 그에 따른 정보는 계속적으로 확장한다.

정보 발전과정의 순환 특성은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의 성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느 한 그룹에 대한 법적 인센티브는 다른 그룹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정보의 순환과정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과보호는 데이터에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도 하는 사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법적 보호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2004. 10. 16 법 7233호.

3) Davis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이하, Davison), pp.251-252.

4) Davison, p.269.

그러나 이것이 모든 정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화번호부의 정보는 과학적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 인간계놈 데이터베이스와 완전히 다르다.⁵⁾ 전화번호부의 정보는 사용자가 변경하거나 추가하지 않고 사용되는 반면, 과학적 데이터베이스는 제작자, 소유자, 사용자가 함께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기여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고되었다. 방대한 데이터의 집합으로 된 디지털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는 그들 자신의 목적에 따라 데이터를 추출하고 배열할 수 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두 가지 영향을 미친다.⁶⁾ 첫째, 수집과 이용 기능 간의 차이를 흐리게 하고, 결국 데이터베이스의 이용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간의 차이를 흐리게 한다. 둘째, 가치가 부가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투자에 아무런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서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실패를 가져온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소유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 유지에 대한 투자를 보호받기 위해서 추가적 법률보호를 요구해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은 정보 상품을 쉽게 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자에게 위협이 되지만, 이는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해서 지적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예를 들어, 암호, 워터마크(watermark))이 제공되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저작권법이 없어도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⁷⁾ 그러나 기술적 방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므로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술적 방법이 소비자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정보에의 접근을 차단하고 제작자가 정보를 독점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Davison, p.253.

6) Thomas Riis, "Economic Impact of the Protection of Unoriginal Databas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Transition," LEFIC Working Paper 2002-03 (이하, Riis, Protection of Databases), available at www.cbs.dk/centres/lefic/working%20papers/WPLEFIC032002.pdf, 2005. 1. 12.

7) Riis, Protection of Databases.

데이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⁸⁾

법이나 법에 관한 글은 용어의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 ‘데이터(Data)’는 사상, 개념, 의사, 명령 등을 표현한 것으로 인간 또는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숫자, 문자, 기호 등을 이용하여 형식화한 것, 즉 현실 세계로부터 관찰이나 측정에 의해서 얻은 가공되지 않은 수치, 문자, 사실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컴퓨터에 저장해서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하여 모아 놓게 되는데 이것을 ‘파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파일은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는 데이터를 어떤 목적에 맞도록 처리하고 가공하여 얻어진 결과로서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자료를 일정한 약속에 의거하여 보다 가치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공 및 처리한 자료로서 자본, 사람, 기술과 더불어 기업 경영에 중요한 요소이다.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⁹⁾ 유럽 지침¹⁰⁾은 데이터베이스를 ‘문학, 예술, 음악, 기타 작품의 집합, 혹은 문서, 소리, 사진, 숫자, 사실, 데이터 등의 집합으로서 체계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배열된 요소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¹⁾ 이러한 정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음의 입법 의도, 즉 방대한 인적 물적 투자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가치 있는 데이터의 편집물을 보호한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경제적 목적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투입된 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었다면 창작되지 않았을지 모르는 새롭고 유용

8) <http://it.bc.ac.kr/utlim/opentext/1장.pdf>, 2005. 5. 10; <http://cyberu.co.kr/docs/sad/chap08.pdf>, 2005. 2. 10.

9) 저작권법 제2조 12의 4호. 한편, ‘어느 특정 조직의 응용 업무를 처리하는 다수의 응용 시스템들이 공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저장된 운영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Davison, p.1.

10)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t para. 17.

11) The term 'database' should be understood to include literary, artistic, musical or other collections of works or collections of other material such as texts, sound, images, numbers, facts, and data; whereas it should cover collections of independent works, data or other materials which are systematically or methodically arranged and can be individually accessed.

한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을 복돋우기 위한 것이다.¹²⁾ 데이터베이스 소유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크게 증가했고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고 공유하는 기술도 크게 향상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비 회수를 위해 보다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들은 개발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계, 과학계, 교육계 등이 모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¹³⁾ 반면에, 과학자 단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의 확대를 반대한다. 이들은 새로운 입법에 의해서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정당성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번성하고 있는 모습은 현행 제도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충분하고 추가적 보호가 필요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는 정보의 확산을 제한하고, 보호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한다. 이로 말미암아 교육 및 과학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 결국 기술발전과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가져올 것이므로 제작자의 개발의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사용을 원활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II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설명하고, III에서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IV에서 유럽지침이 형성되어 온 과정과 유럽지침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V에서 소유권적 방식에 기초한 현행 저작권법 및 유럽지침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VI에서 소유권적 방식의 대안으로서 보상책임체제의 구조와 특징을 소개하고, VII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한다.

12) Riis, Protection of Databases.

13) 박영길, “디지털환경에 있어서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상),” **계간 저작권**, 2000 겨울호, p.19.

II. 데이터베이스의 특성¹⁴⁾

1. 개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일정한 구조와 질서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고, 신속한 정보의 갱신과 보수가 가능하다. 또한 데이터는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삭제, 복사, 전송, 편집, 발췌 등이 편리하며 이용자의 정보요구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가 한데 모여 있으므로 다수의 이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대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를 자원화 하는 역할을 한다. 즉, 데이터베이스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는 최적의 정보전달매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입수와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보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얻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의 활용이 필요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뿐 아니라 그 발전에 필수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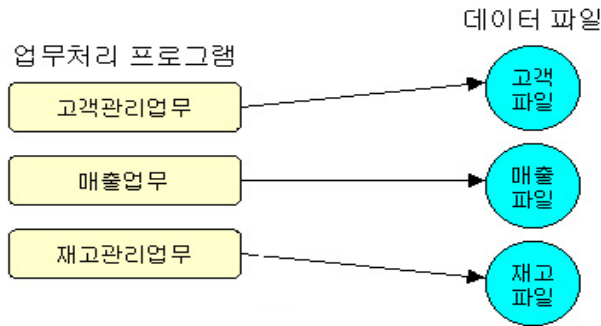
2. 파일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다양한 파일 등은 중복된 자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특정 업무와 특정 처리 방식에만 적합하게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매번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야 하고 파일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경우 처리 과정이 복잡하다. 많은 양의 자료를 보조기억장치에 기억시킬 수 있게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용자가 터미널을 통해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용자들은 컴퓨터로 자료를 처리하고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컴퓨터를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용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하고, 그 기관의 업무 형태 및 특성을 반영할 수

14) 이창한 외 3인, 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12. pp.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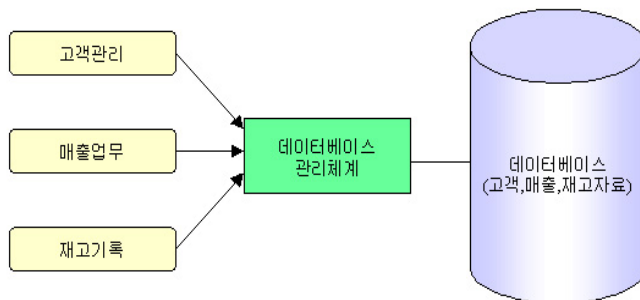
있도록 데이터를 구성해야 한다. 회사의 업무형태와 업무요소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를 체계화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는 목적은 여러 데이터의 체계화를 통하여 경영 및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의 활용방법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적인 방법이 파일을 구성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종래의 파일은 <그림 1>과 같이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처리되었고 이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모두 각각이었다.



<그림 1> 파일 시스템

파일 구성체계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크게 각광을 받았으나, 정보시대로 접어든 현대에서는 파일 체계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자료가 중복되고, 사용자 요구사항 변동시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파일의 유지보수가 용이하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컴퓨터의 이용을 보다 수월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자는 의도에서 생겨난 기술이 데이터베이스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이와 같은 개개의 파일을 <그림 2>와 같이 하나로 통합해서 처리한다.



<그림 2>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통합적인 처리)

3.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및 요구조건¹⁵⁾

데이터베이스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는 데이터의 독립성(논리적·물리적 데이터 독립성),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 데이터의 공유, 데이터의 보안(데이터 안전, 비밀 유지), 데이터 무결성, 실시간 접근성 등이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개발비용이 높은 반면 복제비용은 낮고, 복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산출할 수 있다. 그래서 복제자는 연구 개발비용이 없어 경쟁시장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보다 가격을 현저하게 싸게 책정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개발자의 투자비 회수를 어렵게 하여 시장실패를 초래한다.¹⁶⁾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요구조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보수집물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수집물이다. 산재되어 있는 정보는 가치가 없는 반면 집적하여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집적된 자료는 유용하다.

② 자본투입물

데이터베이스는 자본투입물이다. 정보를 수집, 입력, 분석, 편집하는 과정에 노동과 시간이 투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용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자연히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하게 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③ 편집결과물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데이터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배열하여 필요할 때 용이하게 불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편집결과물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보 또는 데이터의 편집물로서, 대량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여 컴퓨터시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software: SW)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분야의 DB는 해당 분야의 데이터를 망라적으로 포함해야 하므로 데이터의 선택에 창작성을 갖기 어렵다. 특히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배열 및 구성에 창작성을 갖기 어렵다. 즉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를 통하여 정보를 검색, 처리,

15) <http://database.sarang.net/database/general/db-1/db.html>, 2005. 5. 10.

16)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사실상 보호 받을 수 없으므로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상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사용권은 자신에게 국한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타인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 후에도 제작자 자신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공 후에도 데이터베이스의 반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가공, 축적이 용이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므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자체의 독창성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¹⁷⁾ 따라서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준으로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④ 지속적인 변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은 갱신(update), 삽입(insert), 삭제(delete)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⑤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

데이터베이스란 여러 업무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이터를 한데 모아 놓은 것이다. 여러 개의 업무가 있을 때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종래의 파일 처리방식에서는 업무마다 파일을 가졌기 때문에 중복되는 데이터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하였으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러한 중복을 가급적 배제해야만 한다.

데이터가 중복되면 많은 양의 기억장치가 소모되고, 데이터 간에 불일치가 일어나 일관성이 없게 되고 모순성을 내포하게 된다. 그리고 데이터의 갱신, 추가, 삭제 등을 할 때 중복된 모든 데이터를 찾아내어 그들에 대해 전부 수행해야만 되므로 처리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높게 된다. 또한 데이터가 중복 저장되면 자연히 제어가 분산되어 데이터의 무결성(정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⑥ 데이터의 독립성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귀중한 자산이다. 그런데 종래의 파일 처리방식에서는 파일들이 프로그램에 종속되어서 필요한 업무에 따라, 즉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에 종속되는 파일이 생성되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를 응용프로그램과 완전히 독립시켜서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데이터의 독립성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 (logical data indepen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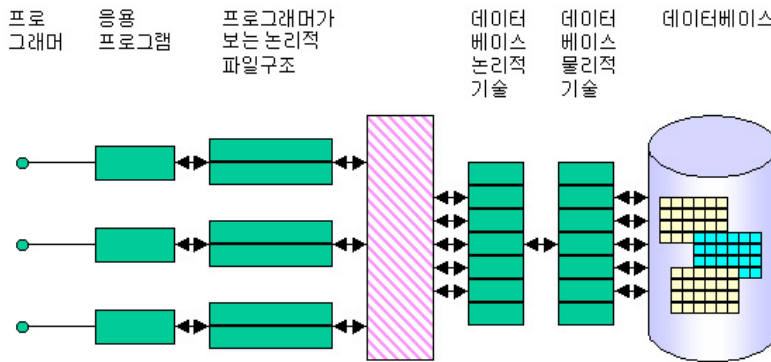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란 기존 응용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¹⁸⁾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조직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적 구조

17) 조소연,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12. p.12.

18) 이석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정익사, 2001. pp.53-54.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응용프로그램들은 각자 자신에 필요한 데이터구조를 요구하고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은 이들 응용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모든 논리적 구조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 기존의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논리적 구조도 함께 변경시켜야 한다면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기존 응용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 요구된다.

종래에는 데이터의 논리적인 구조가 변하면 그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되어야 했다. 이제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만 변화시키면 프로그램을 바꿀 필요가 없다. 이러한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림 3>에서 빗금 친 부분이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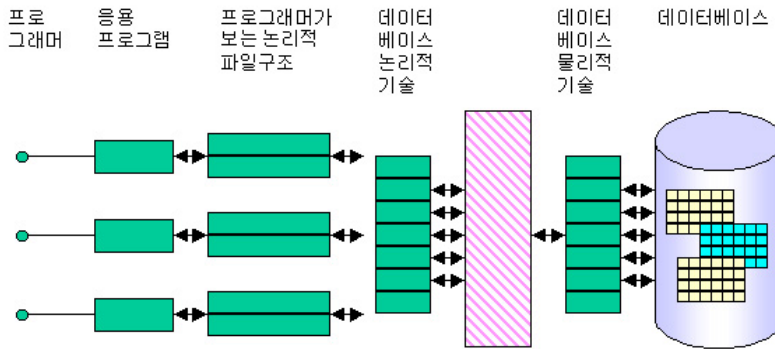


<그림 3>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

⑥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 (physical data independence)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란 기존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새로운 저장장치의 개발로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데이터의 물리적 구조를 변경시켜야 될 때가 있다. 이 경우 이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응용프로그램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⁹⁾ 이와 같이 기존 응용프로그램의 수정을 동반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물리적 구조의 변경이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에도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 유지되기 위하여서도 소프트웨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4>는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을 보여주고 있다. 빗금 친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그림 4>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

⑦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의 무결성(integrity)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나의 사실을 2개 이상의 항목이 표시할 때 그 항목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허점이다. 데이터 값에 대한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갱신, 삽입, 삭제 등의 연산을 수행한 뒤에도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⑧ 데이터의 보호

데이터베이스는 의도적인 혹은 우연한 데이터의 변경, 손실, 노출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데이터 조작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의 무결성을 복구하는 회복성을 지녀야 한다.

⑨ 데이터의 공유와 연결성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기능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이 지원한다. 중복 데이터를 가급적 배제하여야 하고 모든 업무에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내의 데이터

19) 이석호, p.54.

들은 상호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야 한다.

⑩ 실시간 접근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실시간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놓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처리²⁰⁾가 가능하도록 하여 어떠한 문의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⑪ 내용에 의한 참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나 위치가 아니라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내용, 즉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 참조된다.

⑫ 데이터베이스 제작의 경제적 특성

데이터베이스 제작의 경제적 특성 중 하나는 규모의 경제이다. 미국 국립연구이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US)의 연구에 따르면,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현재의 시장은 자연독점과 현저한 경쟁 결핍의 특성이 있다.²¹⁾ 진입비용이 높고 niche market이 매우 작아서 겨우 한 두 개의 업체만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분야의 데이터베이스는 자연현상, 즉 기상현상, 태양흑점주기, 지진 등의 관측결과와 편집물이다. 관측데이터는 시간에 달려 있어서 유일하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비슷한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다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4.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의 특성

데이터베이스는 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즉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에 의하여 운영된다. DBMS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 ① 데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②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 ③ 데이터간의 상호 모순성을 없애므로써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 ④ 예기치 않았던 시스템 장애로부터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⑤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한다.
- ⑥ 응용프로그램에서 데이터의 관리 부분을 다루지 않으므로 프로그램이 간단

20) 실시간 처리(real-time processing)란 생성된 데이터를 컴퓨터에 보내어 그 처리결과를 보고 다음 의사결정에 바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처리방식을 말한다. 이석호, p.36.

21) Riis, Protection of Databases.

해진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의 단점으로는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DBMS가 고장 나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되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DBMS에 대한 단점은 주로 비용 면에 있고 장점은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에 있다. 관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날로 복잡해지고 대용량화 되어 가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DBMS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 가고 있다.

5. 결론

대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수많은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접근하여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계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물리적 기술을 바꾸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응용프로그램, 특히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베이스의 이와 같은 특성은 데이터베이스의 기술혁신이 혁신적으로 일어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새롭게 디자인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수많은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이용방법에 따른 구조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고,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유지해야 하고, 수많은 컴퓨터 및 주변 기기와 상호연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호환성과 상호연동성을 유지할 필요성은 데이터베이스의 기술혁신을 제한한다.²²⁾

특히 자연과학분야의 데이터베이스는 관측결과의 편집물로서 시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유일하므로 현존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는 비슷한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만들 수 없다. 이러한 호환성 및 상호연동성의 필요성과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의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데이터베이스 기술혁신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기초로(cumulative, 누적적으로), 그 연속선상에서(sequential, 연속적으로), 조금씩(incremental, 점증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한마디로 데이터베이스 기술혁신의 특성은 누적적, 연속적, 점증적이라 할 수 있다.²³⁾

22) 호환성(compatibility)과 상호연동성(interoperability)에 대하여는 Dae-Hwan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Pakyoungsa, 2005 (이하,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라 한다.), pp.90-92. 참조.

23) 이것은 현대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혁신의 특성과 유사하다.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pp.96-98. 참조.

Ⅲ.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²⁴⁾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²⁵⁾ 저작권법의 최상의 목적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²⁶⁾ 저작권제도는 과학, 발견, 그리고 이에 따른 공공영역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저자가 자신의 과학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생명공학 관련 회사들은 현재의 저작권법이 자신들의 투자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만든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학문적 이용에 대한 장벽은 학술 연구자들이 필수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과학과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저작권법은 공공영역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1. 저작권의 보호대상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⁷⁾ 이 정의에 기초하여 도출되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에는 ①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② 창작성이 있을 것, ③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등이 있다.²⁸⁾ 신규성은 절대적인 개념인데

24) 저작권보호의 일반 원칙은 Davison, pp.10-49. 참조.

25) 저작권법 제4장의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2003.5.27. 본장 신설); Davison, p.12.

26) 저작권법 제1조;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 I, Section 8. The U.S. Constitution grants the Congress “the Power ...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he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

27)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는 저작물을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now known or later developed, from which they can be perceived, reproduced, or otherwise communicated, either directly or with the aid of a machine or device”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물에는 ‘(1) literary works; (2) musical works, including any accompanying words; (3) dramatic works, including any accompanying music; (4) pantomimes and choreographic works; (5) pictorial, graphic, and sculptural works; (6) motion pictures and other audiovisual works; (7) sound recordings; and (8) architectural works’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lated Laws Contained in Ti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 (US Copyright Law), Chapter 1. § 102. Subject matter of copyright: In general (a).

반하여 창작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을 의미한다.²⁹⁾ 그래서 만약 어느 작가가 자신의 노력으로 그 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운동주의 「序詩」³⁰⁾와 완전히 동일한 시를 작성하였다면 그것은 독립된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고, 제3자가 비록 운동주의 「序詩」를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작가의 시를 복제할 수는 없다.³¹⁾ 또한 진보성은 선행기술에 비하여 기술적 진보를 가져온 것을 가리키는 반면 창작성은 기존의 작품에 비하여 문학적, 학문적, 또는 예술적으로 진보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저작물의 요건은 특허법이 요구하는 특허요건에 비하여 훨씬 완화된 것이라고 하겠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에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창작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아이디어, 절차(procedure), 공정(process), 시스템, 작동방법(method of operation), 개념(concept), 원리(principle), 발견(discovery)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³²⁾

1) 편집과 수집

데이터베이스는 편집, 수집, 혹은 이들의 혼합물이다.³³⁾ 편집물은 기존의 작품이나 데이터를 모으고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작권적 특성을 가진다. 기존의 작품에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예를 들어, 저작권은 개개의 詩뿐만 아니라 詩의 편집물에도 존재할 수 있다. 각 詩의 저작권은 편집물의 저작권과는

28) 오승중 외 1, **저작권법**, 박영사, 2005. 3.(이하 오승중 외1), p.23.

29) 오승중 외 1, p.25.

30)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피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31) 유사한 사례들의 소개를 보려면, 오승중 외 1, p.26. 참조.

32) US Copyright Law, Chapter 1. §102. Subject matter of copyright: In general (b). The restricted items, e.g. idea, procedure, process, system, method of operation, concept, principle, or discovery, may be under the patent protection.

33) Davison, p.12.

독립되어 있다.

편집물의 소재에 저작권이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축구선수의 수행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통계표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통계표 내의 개별 데이터는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2) 창작성(originality)

창작성은 모든 저작권제도에서 요구된다. 창작성의 의미는 사법영역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 창작성 판단에 대한 접근 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이론과 지적창작이론³⁴⁾

노동이론에서 창작성은 저자가 작품을 만드는 데 상당한 노력을 투자했음을 보일 때 인정된다. 저자는 충분한 노동과 기술과 판단을 작품의 제작에 투입했음을 보여야 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노동이론에 가까운 입장이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만 않았으면, 즉 어떤 작품의 기원(origin)이 작가 자신에게 있으면 창작성을 인정하였다.³⁵⁾ 반면에 대륙법계에서는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소한 문화발전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창작성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originality, 대륙법의 입장에서는 creativity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 creativity는 originality보다 높은 수준이다.³⁶⁾

지적창작이론에서 창작성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저작물이 지적창작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³⁷⁾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이 채택하였다. *Feist* 사건에 따르면 편집물

34) ‘노동이론’과 ‘유인이론’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노동이론의 입장에서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부여하는 근거를 저작자의 노동의 대가라고 한다. 그래서 저작자의 노동이 투입된 이상 아주 낮은 수준의 창작성만 있어도 저작물로 인정한다. 그러나 유인이론에서는 저작권 부여의 근거를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문화발전을 유인한 대가라고 본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발전을 유인할 정도의 높은 창작성을 요구한다. 오승중 외 1, pp.25-26.

35)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lated Laws Contained in Ti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 § 102. Subject matter of copyright: In general (a) ‘Copyright protection subsists, in accordance with this title, in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36) 오승중 외 1, p.26.

37)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 Ser. Co.*, 499 U.S. 340 (1991).

이 저작권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를 저자가 독립적으로 제작하고 창의성이 나타남으로써 독창적이어야 한다. 저작권은 독창적 표현이 없는 사실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Feist*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원고가 저작물성이 없는(uncopyrightable) 사실들을 독창적 방식으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배열했는지의 여부였다.³⁸⁾ 이 사건은 종래 미국 법원이 취해왔던 노동이론으로부터 상당히 탈피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지적창작이론은 저작권의 주된 목적이 저자의 노력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적창작이론에 입각한 저작권은 저자의 독창적인 표현에 권리를 부여한다.³⁹⁾ 많은 유럽국가들은 창작성 요건에 지적창작을 요구한다. 지적창작은 어떤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자의 창의적 선택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창작성의 스펙트럼

창작성 기준은 사법영역마다 다르고 사법영역 내에서조차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창작성 기준은 최저기준으로서 이마의 땀 기준(sweat of the brow: 노동이론)⁴⁰⁾에서부터 최고기준으로서 작품에 저자의 인격의 刻印이나 지적창작을 요구하는 기준까지 다양하다. 노동이론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있어서 저자의 지적 창작이 적용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저자의 노력을 인정한다. 이 기준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데 투여된 노력의 양을 고려하여 저작권 보호가 주어진다. 그래서 저작자의 투자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다.

최고기준으로서 지적창작기준에 의하면, 이미 존재하는 작품이나 데이터의 선택과 배열에 지적창작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요구되는 독창성의 수준에 미칠 만한 지적창작성이 있어야 하지만 소재의 선택과 배열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지적노력을 포함하기 어렵다. 둘째, 정보를 생산하는 데 상당한 지적 활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창작활동은 데이터베이스나 편집물의 독창성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¹⁾ 정보를 생산하는 지적 활동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인간게놈의 생화학적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사전에 알려지지 않

38) 499 U.S. 340 (1991), at 362.

39) 499 U.S. 340 (1991), at 349-50.

40) 이하에서 ‘노동이론’은 ‘이마의 땀 요건’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41) Davison, p.19.

은 계몽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고 관계된 실험을 할 때에도 상당한 지적 능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저작권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상의 표현이 아니라 자연현상의 발견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창작성의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최하단 노동이론에서는 작품의 창작성을 결정할 때 편집물을 만드는 노력의 투자를 고려하므로 상당한 정확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중간 단계에서는 노력과 어느 정도의 지적창작활동의 조합을 고려한다. 최상단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마지막 표현과 직접 연결된 지적능력(intellectual skills)만을 인정한다. 지적창작기준에서는 작품의 아이디어가 새롭거나 진보적이거나 독창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아이디어의 표현만 독창적이면 된다. 그러나 단순한 정보나 데이터와 같은 콘텐츠의 편집은 창작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데는 곤란한 점이 있다.⁴²⁾ 저작권은 이미 존재하는 작품이나 데이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은 사전에 존재하는 작품이나 데이터를 획득하고 증명하고 선택하고 배열한 것에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극단적인 노동이론에 의하면 문화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저작물도 보호하게 되어 저작권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극단적인 지적창작기준에 의하면 예술성·학술성 등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좌우되어 법적 안정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창의성을 요구할 것인지는 해당 사회의 문화수준을 고려하여 법정책적 입장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를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

42) Davison, p.17.

을 정도이면 충분하다…….’⁴³⁾

2. 저작자 (Authorship)

독창적인 작품에는 반드시 저자가 있다. 그러나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 개념의 저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데이터를 체계화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데이터가 자동으로 배열되는 전자 데이터베이스(electronic databases)의 경우이다. 이때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자동으로 배열하므로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있고 별도로 저자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⁴⁴⁾ 그러나 컴퓨터가 소재를 배열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체계를 고안한 주체는 사람이다. 또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검색을 위한 색인이 있고, 색인은 검색에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무슨 정보가 요구될 것인지, 그리고 색인 작업의 비용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색인 작업과정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매우 복잡해진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될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데이터 출력형태를 사전에 예측한다. 제작자는 컴퓨터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도록 그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작업결과를 표현 방법을 설계한다. 대부분의 상업 목적의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데이터베이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제작자가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데이터를 배열하고 구성한다. 그래서 컴퓨터가 설계대로 자동으로 실행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 저작권법이 컴퓨터로 만들어진 작품의 저작자는 그 작품의 창작에 필요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⁴⁵⁾

3. 침해 (Infringement)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과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독창성에 관한 논의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로 발전한다.

43) 대법원 1995. 11. 14. 94도2238 판결.

44) Davison, p.21.

45) Section 9(3) of the UK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1)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 양적·질적 측정 46)

저작권법 제73조의4에 의하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substantial part)’(이하 상당부분이라 한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어떤 작품의 일부분에 대한 ‘상당성(substantiality)’은 그 부분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한다. 취해진 부분의 양을 측정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하나 그 質을 측정하는 것은 독창성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보다 어려운 일이다. 質에는 어떤 작품의 탁월성과 그 작품의 특성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작품이 독창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작품의 탁월성 정도는 판단하지 않는다.⁴⁷⁾ 그래서 침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당부분’이 취해졌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해진 부분의 탁월성이 아니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또한 그 작품의 창작성이 어디에 있는지의 문제와 연관되고, 다시 노동이론에서 지적 창작 이론에 이르기까지의 창작성 판단기준과 관계된다.

창작성 기준의 하단에서는 디자인이 매우 다르더라도 많은 정보가 취해졌을 때 침해를 인정한다.⁴⁸⁾ 반대로 독창성 기준의 상단에서는 선택과 배열(즉, 디자인)이 취해졌을 때 정보의 분량에 관계없이 침해를 인정한다.⁴⁹⁾ 한마디로, 창작성 판단기준이 달라지면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것도 변한다. 그래서 창작성 기준이 낮은 작품에 있어서, 상당한 분량의 데이터는 그 작품의 ‘상당부분’을 구성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소재를 취하고 정확성을 검증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포함시키는 데는 상당한 량의 노동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적 특성과는 관계없이 이 노력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창작성이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데 있어서 지적 창작성에만 관계된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부분’ 즉, 창작성이 있는 콘텐츠의 선택과 배열이 취해진 경우에만 침해가 인정될 것이다. 그래서 콘텐츠의 선택과 배열이 취해지지만 않는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서도 데이터베이스의 많은 콘텐츠를 취할 수 있게 된다.

46) Davison, pp.25-28.

47) Davison, p.26.

48) English Court of Appeal decision, *Waterlow Publishers Ltd v. Rose* (1990) 17 IPR 493. Davison, p.28에서 재인용.

49) *Feist case*.

이상에서는 스펙트럼의 양단만 논의하였다. 그러나 창작성은 (1) 노동(sweat of the brow)과 약간의 창작성(creativity)이 결합된 것, 혹은 (2) 약간의 노동(sweat of the brow)과 창작성(creativity)이 결합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의 경우 노동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에 불충분할지라도 약간의 창작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노동과 창작성의 결합에 저작권 보호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2) 권리의 침해 (Rights that are infringed)

침해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확정해야 한다. 저작권자의 권리는 창작성의 문제처럼 사법영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저작권의 일반적 성질은 국제저작권조약 때문에 대체로 유사하다.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는 복제권, 전송권, 대여권, 배포권 등이 있고, 저작물への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금지할 수 있다.⁵⁰⁾

4. 저작권

1) 복제권 (Rights of reproduction)

복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6조). 따라서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복제권의 침해가 된다.

복제권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작품의 상당부분이 복제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컴퓨터 스크린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를 보는 과정에서 복제가 일어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콘텐츠를 보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콘텐츠의 일시적 복제가 일어나므로 사용자는 침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콘텐츠의 일시적 복제는 저장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저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침해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데이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취하여 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배열할 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데이터의 수작업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디지털 복제를 선택하겠으나 이때 그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50) Article 11 of the Copyright Treaty.

2) 배포권 (Right of distribution)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스스로 배포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3조). 여기서 배포는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유럽지침은 저작권자에게 데이터베이스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배포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다.⁵¹⁾ 저작권조약에도 배포권이 포함되어 있다. 즉, 저작권 조약 제6조는 ‘문학적·예술적 작품의 저자는 판매나 다른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그들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본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제물에도 적용된다.⁵²⁾

배포권은 권리소진의 원칙⁵³⁾에 의하여 제한된다. 즉, 저작물의 배포권은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

3) 대여권 (Right of rental)

최초판매가 이루어지면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소진되기 때문에 양수인은 이를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업적 대여는 저작권자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저작권자에게 인정한 권리로써 최초판매 이후에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적법한 양수인에게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대여권이라 한다. 대여권은 CD나 DVD 같은 저장매체로 배포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영화작품의 복제물과 관계된다. 대여권은 TRIPs에 규정되어 있다.⁵⁴⁾

4) 전송권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전송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전송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51) Article 5 of the Directive.

52) Agreed Statements Concerning Articles 6 and 7 of the Copyright Treaty, CRNR/DC/96.

53) 오승종 외1, pp.311-312.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54) Article 11 of TRIPs (Rental Rights) In respect of at least computer programs and cinematographic works, a Member shall provide authors and their successors in title the right to authorize or to prohibit the commercial rental to the public of originals or copies of their copyright works.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8조의2).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9의2호). 방송은 동시적 송신의 경우만을 의미하고 1대다수, 일방향성, 실시간 진행 등의 특성이 있는 반면, 전송은 쌍방향성, 이시성(異時性)을 띠는 점에서 방송과 다르다.⁵⁵⁾ 즉 전송은 1대1로 이루어지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작품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조약 제8조는 전송권을 규정하고 있다.⁵⁶⁾

5) 기술적 보호장치에 대한 보호

저작자는 기술적 보호장치를 우회하도록 개발된 장치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저작권조약 11조는 그러한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⁵⁷⁾ 데이터베이스가 기술적보호조치로 보호되어 있으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기술적 보호수단(self-help measures)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나 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배열이나 선택의 상당부분을 취하지 않으면서 콘텐츠를 취하지 못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에 도입된 기술적 보호수단을 우회하지 않으면 사실상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수단은 사실상 저작권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할 수 없게 한다. 우회장치의 제조와 판매의 제한을 통해서, 소재에 저작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술적 보호장치에 의해서 보호되는 어떤 소재에의 접근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보호장치에 대한 보호는 공중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부

55) 오승중 외1, pp.296-298.

56) WIPO Copyright Treaty, Article 8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uthors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works, by wire or wireless means, includ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ir work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se works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57) WIPO Copyright Treaty, Article 11 (Obligations concerning Technological Measures)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 circumvention o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that are used by author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under this Treaty or the Berne Convention and that restrict acts, in respect of their works, which are not authorized by the authors concerned or permitted by law.

당하게 제한하게 되거나 사용권을 가진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6)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사항 (Exceptions to copyright)

창작성기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낮은 나라에서보다 저작권 예외규정(exceptions to copyright)이 보다 제한되어 있다. 저작권을 상대적으로 많은 작품에 부여하는 영국에서는 폭넓은 예외규정, 예를 들어 연구나 개인적 학습, 혹은 비평이나 사건의 보도를 위하여 상당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창작성기준이 높은 프랑스법은 예외규정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7) 강제실시제도 (Compulsory licensing)

강제실시제도가하에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를 상응하는 보상의 대가로 허락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 즉 교육, 뉴스와 사건의 보도, 정부의 활동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하여 저작물への 접속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개별 주체들이 사용계약에 이르는 계약비용이 지나치게 비쌀 때, 일반적으로 강제실시가 필요하다. 이용료를 계약 당사자가 협상할 때보다는 강제실시와 같이 법원이 부과할 때 저렴해질 것이기 때문에 소재에의 접속이 보다 쉬워질 것이다.

강제실시는 한 사용자가 수많은 서로 다른 저작물을 이용할 때도 필요하다.⁵⁸⁾ 그러나 이 사유는 디지털 환경에서 점차 그 근거를 상실해가고 있다. 디지털 저작물への 접속을 자동으로 모니터하고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접속에 대한 표준비용이 정해지면 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저작물への 접속이 기록될 수 있다. 더욱이 수많은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기구가 있다면 거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접속에는 재정적 접속과 물리적 접속이 있다. 강제실시는 물리적 접속과 재정적 접속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공정이용의 항변과 같은 예외는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적 접속을 보장하지만, 이것이 물리적 접속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리적 접속이 보장되지 않고는 공정이용의 항변은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물리적 접속과 함께 재정적 접속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술적 보호수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의 접속을 통제하

58) 예를 들어, 다양한 음악레코드를 방송하는 방송국.

고, 저작권법을 통해서 기술적 보호장치의 우회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⁹⁾

5. 저작권 보호의 요약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선택과 배열에 충분한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창작성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침해할 때는 항상 창작성 문제가 제기된다.⁶⁰⁾ 데이터베이스에 저작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창작성과 저자가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으며, 사법영역별 창작성 기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침해문제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창작성 기준, 데이터베이스의 상당부분 및 침해된 권리의 정의 등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침해 문제는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되어야 하는 행동의 범위와, 저작권자가 그들의 저작물에 접속을 제공해야 하는 범위의 문제도 포함한다.

IV. 유럽공동체의 입법례⁶¹⁾

유럽지침의 주요 문제점은 그 입법 由來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최초의 제안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하여 제한된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관대한 예외조항과 강제실시규정이 있었고, 특별법적 권리(*sui generis right*)는 전자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았고 보호기간은 10년이였다.

최종 결과인 유럽지침은 대체로 저작권법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 특별법적 권리는 낮은 수준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영국 저작권법의 특성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체제에 어울리는 예외조항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유럽지침은 최초로 제안된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보호기간은 15년이지만 일정한 조건에 따라 갱신함으로써 영속적 보호가 가능하고, 전자적인 것이건 혹은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에 저작권이 있는 것이건 불문하고 적용되는 포괄적인 독점권

59) 베른 조약(Berne Convention)은 저작자에게 강제실시를 분명히 허락하면서도 그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60) Davison, pp.36-37.

61) Davison, pp.50-102.

이 되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소유자의 특별법적 권리는 최초로 의도했던 것보다 상당히 넓고 강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입법 과정을 살펴본다.

1. 녹서 (The Green Paper)

유럽에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한 최초의 제안은 EC 집행위원회⁶²⁾가 1988년 6월에 발표한 “저작권과 기술의 도전에 관한 녹서”⁶³⁾의 제6장에 있다. EU 여러 나라의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서로 달라서 ‘녹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의 통일화 수단을 제안했다. 녹서는 보호형식에 대하여 특별한 세부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보호영역과 제한행위를 주의 깊게 고려하여 디지털정보에의 접근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다.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저작물성에 관계없이 데이터베이스 편집 형식에 대한 보호도 제안되었다.

2. 초안 (The First Draft)

EC 집행위원회의 초안(1992. 5.)에는 새로운 지침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서 (Explanatory Memorandum for a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⁶⁴⁾가 첨부되어 있다. 설명서는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62) EC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유럽연합(EU)의 중심기구로 정부로 치면 행정부다. 유럽연합(EU)의 모든 정책은 집행위원회의 발의에서 시작하고, 집행위는 EU 이사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회원국가가 제대로 실행하는가를 감독한다. 집행위원회는 본래 15개 회원국에서 추천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2004년 회원국이 25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집행위원회 위원도 30명으로 늘어났다. 인구와 국력을 고려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2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회원국은 1명씩 추천한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심의결정하는 모든 안건을 입안 제출하는 ‘정책발의권’, 결정된 정책을 회원국가가 적절히 실행하는가를 감독하거나 또는 직접 정책을 실행하는 ‘집행권’, ‘EU 기금 관리·운영권’, 긴급수입제한 조치, 덤핑규제 등 긴급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긴급 조치조항 운영권’ 등을 갖는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대외협상에서 EU를 대표하며 제3국 및 국제기구에 EU대표부를 파견하고,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외국과 대외협상을 진행한다.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5529>, 2005. 5. 21.

63) Chapter 6 of the EC Green Paper on Copyright and the Challenge of the Technology 1998, COM(88) 172 Final, (이하, 녹서).

64) *Explanatory Memorandum for a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COM(92) 24 final SYN 393 Brussels, 13 May 1992(이하, Explanatory Memorandum).

산업을 보호할 경제적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보가 점차 상품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유럽연합의 경제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⁶⁵⁾ 1990년에 미국은 세계시장의 56%를 유럽은 단지 25%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시장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으나 ‘유럽연합내에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를 통일되고 안정되게 보호하는 법체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⁶⁶⁾

초안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불일치 문제에 대한 신중한 해법을 제시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비전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지 않았고,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에 저작권이 있으면 특별법적 권리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많은 예외조항이 있었다. 한마디로 초안은 저작권이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를 보호하지 않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3. ‘유럽회의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서

유럽회의에 제출된 초안은 ‘유럽회의경제사회위원회(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f the Council: 유럽회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유럽회의위원회’의 의견서(The Opin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유럽회의위원회의견서))는 1992. 11. 24. 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⁶⁷⁾

유럽회의위원회는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지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⁶⁸⁾ 유럽회의위원회는 특히 지침에 내재된 법적 원리, 특히 창작성 문제에 관한 논쟁을 지양할 것을 권고

65)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지식 집약산업이다. ② 정보기기, 네트워크, S/W 등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③ 정보처리기술의 혁신 등 국가기반산업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 ④ 정보자원의 공유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⑤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세계 각국에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국가의 국제화를 지원한다. ⑥ 다양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사회 활동을 효율성을 높인다. ⑦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⑧ 정보사회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6회 데이터베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1998. 6. 23.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http://register.itfind.or.kr/Report/200101/DPC/DPC98-11-C5/DPC98-11-C5.pdf>, 2005. 7. 26.

66) Paragraphs 1.1, 1.4.

67) *Opinion on the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J No. C19.

68) Paragraph 2.1 of the Committee's Opinion.

했다. 특히 유럽회의위원회는 지적창작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와 노동(sweat of the brow)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⁶⁹⁾

영국과 스페인은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강한 저작권보호를 하고 있지만, 영국은 유럽공동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고⁷⁰⁾ 스페인은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미미한 상태라고 하면서도,⁷¹⁾ 유럽회의위원회의견서는 유럽공동체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강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좀더 오랜 기간 동안⁷²⁾ 보다 강력하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⁷³⁾ 그래서 새로운 권리는 어쨌든 배타적 권리로서, 기존의 저작권이나 노동에 대해서 부여되는 저작권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⁷⁴⁾ 한 마디로 유럽회의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보호 권리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었다.

유럽회의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에 변경을 가한 후 새로운 보호기간의 始點을 설명했는데,⁷⁵⁾ ‘새로운 보호기간의 始點은 데이터베이스의 각 데이터들이 전자적으로나 “日字捺印”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진 때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각 데이터들은 日字捺印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보호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개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러한 권고에 따르면 일정기간 경과 후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부분은 보호가 만료되고 업데이트된 다른 부분은 보호기간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요약하면, 유럽회의위원회의견서는 초안과 완전히 다르다. 유럽회의위원회는 노동이론에 입각하여 통일된 창작성 기준을 도입하고, 기존의 저작권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부가하기를 원했다. 유럽회의위원회는 초안보다 보호기간이 길고, 기존의 저작권 체제 내에 새로운 배타적 권리의 창설을 원하였고, 강제실시제도에 반대했다. 한마디로 유럽회의위원회는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육성

69) Paragraph 2.3(b).

70) Paragraph 1.2.

71) Paragraph 2.2.2 and 2.2.3 of the Explanatory Memorandum, General. The predicted UK turnover for on-line services for 1992 was 1,770 million ECU, while the predicted Spanish 26 million ECU.

72) 아무런 설명이 없이 위원회는 10년의 보호기간이 너무 짧다고 했다.

73) Paragraph 2.3.b of the Committee's Opinion.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

74) Paragraph 2.3(b).

75) Paragraph 3.14 of the Committee's Opinion.

하는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저작권법 체제조차도 무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⁷⁶⁾

4. 유럽지침

유럽연합은 1996. 5. 11.자 지침의 최종안을 채택했다. 유럽지침의 중요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① 備考(The recitals)에서는 유럽지침을 정당화했다.
- ② 제1장은 유럽지침의 범위,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기술했다.
- ③ 제2장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특히 유럽연합내에서의 저작권 보호의 통일화 문제를 다루었다.
- ④ 제3장과 제4장은 특별법적 권리와 그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만들고, 移行 문제, 시행에 따른 영향의 대비책 등을 다루었다.

1) 비고 (The recitals)

유럽지침의 실제 규정보다 긴 ‘비고’는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상당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의 투자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손쉽게 복제될 수 있다. 유럽회원국들내에서 기존의 법제도는 이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않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안정되고 통일된 법률체제를 도입하여 유럽연합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를 구하고 확인하고 나타내는 데 소요되는 투자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적 권리가 필요하다.⁷⁷⁾ 유럽연합 내에서 기존의 보호수준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유럽공동체 설립조약(1957)의 근본 취지에 따라 유럽공동체내에서의 통일된 보호가 필요하다.

2)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유럽지침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체계적 혹은 규칙적 방법으로 배열되고, 전자적 혹은 다른 수단에 의해 개별적으로 접속 가능한 작품, 데이터, 혹은 다른 소재의

76) Paragraph 2.1 of the Committee's Opinion.

77) Recital 40.

집합'을 의미한다.⁷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 정의는 지나치게 넓어서 이 정의에 따르면 웬만한 것은 모두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례집도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판례집의 내용은 보통 체계적으로 배열되기 때문이다. 정기간행물도 목차, 색인, 권, 발행번호, 카테고리(예, 논문, 비평 등)와 같은 체계적 방식으로 배열된 작품집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다.

3) 컴퓨터프로그램

유럽지침은 전자적 수단으로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 작동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이나 특별법적 권리로 보호하지 않고 있지만,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유럽지침의 보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유럽지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대단히 넓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컴퓨터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가 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컴퓨터프로그램은 체계적·조직적으로 배열되고 전자적 수단에 의해 개별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인하고 나타내는 데에는 질적·양적 투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프로그램은 거대한 데이터(비록 이 데이터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를 갖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다. 유럽지침은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 및 데이터베이스의 선택이나 배열에 대한 보호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현행 저작권법 제4장의2 제73조의3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⁹⁾ 독일 저작권법은 유럽지침을 수용하여 1997. 7. 22.자로 개정하였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창작하거나 그 요소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일부분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⁸⁰⁾

4)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78) Article 1(2) of the Directive.

79)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외에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제73조의3).

80) Davison, pp.74-75.

유럽지침 Article 3(1)은 그 콘텐츠의 선택과 배열에 의하여 저자 자신의 지적 창작을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Article 3(2)는 이 유럽지침에 의하여 주어지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가 그 콘텐츠에 까지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지침에 의하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행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 (a) 데이터베이스의 일시적·영구적 복제(reproduction);
- (b) 번역(translation), 각색(adaptation), 배열(arrangement), 변경(alteration);
- (c) 공중에의 배포(distribution to the public);
- (d) 공중에의 통신(communication), 전시(display), 실행(performance)
- (e) (b)에 의한 결과의 복제, 배포, 통신, 전시, 실행

5) 개별 소개 등의 복제

유럽지침 Article 3(2)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가 콘텐츠에는 미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Article 7(5)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콘텐츠의 상당부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추출 또는 재이용을 금하고 있다.⁸¹⁾ 이들 규정은 서로 상충된다. 즉, Article 3(2)에서는 저작권 보호가 콘텐츠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Article 7(5)에서는 콘텐츠의 상당부분이 아니라도 이를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Article 7(5)에 의할 경우 저작권보호는 콘텐츠까지 확대가 되어 Article 3(2)의 사문화를 초래하고, 콘텐츠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6) 저작권의 예외 (Exceptions to copyright in databases)

사용권자(licensee)는 사용계약에 허락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스크린에서 보는 것은 비록 기술적으로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CD-ROM 형식으로 데이터베

81) Article 7(5) of the Directive. 'The repeated and systematic extraction and/or re-utilization of insubstantial parts of the contents of the database implying acts which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at database or which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maker of the database shall not be permitted.'

이스를 구입한 첫구매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한 제3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즉, 제3자가 컴퓨터스크린에서 이를 보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Article 6(2)(a)는 비전자적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적인 목적의 복제를 허락하고 있다. Article 6(2)(b)와 (c)는 비상업적 목적의 교육이나 과학 연구를 위한 ‘해설’(illustration)이나, 공공의 안전이나 행정·사법 절차의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들이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 및 교육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 ① ‘교육이나 과학연구의 해설(illustration)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특히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해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 ② 예외는 단지 가르치는 데에만 있고 공부하는 데에는 없다. 즉 교사에게만 있고 학생에게는 없다.
- ③ 가르치고 연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에 대한 예외는 비상업적 목적에만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교육 및 연구 기관들이 상업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업적 목적’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유럽지침의 예외 사항은 저작권 보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것에 가깝다. 이들 국가에서는 높은 독창성기준으로 말미암아 예외사항이 적다. 높은 수준의 독창성을 요하는 저작권체제에서의 협소한 예외사항들이 노동이론을 수용하고 있는 특별법체제인 유럽지침에 도입된 것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투자와 노력의 결과물에 그 노동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창작성을 넓게 인정하여 왔으나, 대륙에서는 정보와 기술에의 접근성을 높여 학문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였다.

7) 요약

유럽지침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함에 있어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창작성이 없어도 상당한 투자를 통해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과 유사한 특별법적 권리를 주고 있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선택이나 배열이 저작자의 지적창작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유럽지침 Article 7(1)은

‘회원국은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취득·검증 또는 표현에 대하여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의 추출이나 재이용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대부분이 해당분야의 정보를 최대한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택에서 창작성을 찾기 어렵고, 그 배열방식도 사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관점에서 추가되었다.

위 규정상의 ‘상당한 투자’의 위험을 부담한 현실적 투자자는 투자결과물에 대한 무단 추출⁸²⁾이나 재이용⁸³⁾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 금지청구권은 제작이 완료된 날로부터 15년 되는 해의 말까지 권리가 존속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상당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호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갱신함으로써 영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보호기간이 지나면 데이터베이스를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므로 보호기간은 계속 연장되고,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는 한 데이터베이스의 영속적 보호는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콘텐츠의 상당부분이 아니라도 일정한 경우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콘텐츠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V. 현행 저작권법의 태도와 문제점

1.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규정

우리나라 저작권법(2003. 5. 27. 개정) 제2조 제12의 제2항에서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동 제3항에서

82) ‘추출’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어떠한 수단으로나 형식으로든지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매체로 옮기는 것이다. 지침 제7조 제2항 (a).

83) ‘재이용’은 복제물의 배포·대여·온라인 기타 형식의 송신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모든 형식을 말한다. 정상조 외 5인, 데이터베이스 보호방안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연구보고서, 2000. 12. p.131.

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 제4항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재의 선택, 배열 및 구성의 창작성'에 달려있다. 동 제5항에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라고 정의함으로써 노동이론에 입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설된 제4장의2의 제73조의4 제1항에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동 제4항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저작권 보호가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동 제2항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사항으로서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들면서,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하는데,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갱신을 위한 투자에 의하여 영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2. 현행 저작권법과 유럽지침의 비교

우리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유럽지침과 비교해보면 이들이 서로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을 서로 비교하여 유사한 부분을 찾아 공통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유럽지침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 혹은 규칙적 방법으로 배열되고, 전자적 혹은 다른 수단에 의해 개별적으로 접속 가능한 작품, 데이터, 혹은 다른 소재의 집합’⁸⁴⁾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현행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하여 둘 다 전자적이든 비전자적이든 형태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2) 갱신등에 의한 보호기간의 연장

유럽지침의 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완료일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해부터 15년간이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상당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호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갱신함으로써 영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⁸⁵⁾ 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은 5년인데,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5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갱신을 위한 투자에 의하여 영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보호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사실상 갱신 등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영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동일하다.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사항으로서 유럽지침 Article 6(2)(b)는 ‘비상업적 목적의 교육이나 과학 연구를 위한 해설’(illustration)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비상업적’이라는 용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이라는 용어에 차이

84) Article 1(2) of the Directive.

85) Article 10(3) of the Directive.

가 있을 뿐 이들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나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제작자의 권리가 제한되도록 한 점이 동일하다. 또한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단서를 달고 있는 점도 서로 유사하다.

4) 개별 소재 등의 복제

유럽지침은 저작권 보호가 콘텐츠에는 미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부분이 아니라도 제작자의 이익을 해치는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추출 또는 재이용은 허락되지 않고 있다.⁸⁶⁾ 현행 저작권법 제2항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⁸⁷⁾고 규정함으로써 개별 소재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즉 상당부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침해를 구성하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또는 개별 소재에까지 권리가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3. 문제점

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유럽지침의 보호방식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점은 공통된 것이 많다. 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규정 상호간 일치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4항에서는 개별소재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73조의4 제2항의 규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86) Article 7(5) of the Directive.

87) 제4장의 2의 제73조의4 제2항.

이 규정에 의할 경우 사실상 개별소재에까지 저작권 보호가 미치도록 허용하고 있어 위 두 규정이 서로 배치되고 있다.

둘째, 공유자산의 사유화를 초래하고 원활한 지식의 순환을 방해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별소재만을 반복적으로 복제하더라도 권리침해가 되어 개별소재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공공의 영역에 있어야 할 개별소재가 사유화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갱신등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영구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개인이 정보를 영구히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저작권법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한 갱신등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부분별로 권리의 존속기간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항상 최근에 갱신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부에 대한 존속기간의 갱신은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한 존속기간의 갱신이 되고 만다. 즉, 최근에 갱신등을 한 부분이 있음으로써 해당부분의 존속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지속적인 데이터의 업데이트는 필수적이므로⁸⁸⁾ 데이터의 업데이트는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업데이트가 계속되는 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는 영구히 계속된다. 이러한 현상은 공유자산의 사유화를 고착시키고, 제작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어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즉,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 사용자간의 순환과정을 통하여 발전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과도 부합하지 않아 지식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셋째,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에서 창작성을 찾기 어렵다. 제2조 제12의4항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소재의 선택, 배열 및 구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을 갖기는 매우 어렵다. 즉 특정 분야의 유용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모든 데이터나 사실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해당 분야

88)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은 갱신(update), 삽입(insert), 삭제(delete) 등을 통하여 자주 변경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의 모든 소재를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가 익숙한 기존의 배열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택하기는 매우 어렵다.⁸⁹⁾ 그래서 소재의 배열도 사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기존의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열 또한 창작성을 갖기 어렵다.

넷째, 데이터베이스를 배타적 권리로 보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컴퓨터시스템, 인터넷,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호환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에서 작동할 수 없고,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유지한 채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추가된 소재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흐트러뜨리거나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에 변경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새로운 저장장치의 개발로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응용프로그램들과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구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새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비용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은 ‘점증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현대 첨단기술은 일반적으로 선행기술을 바탕으로(cumulative) 선행기술의 연속선상에서(sequential) 점증적으로(incremental) 기술혁신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점증적·연속적 기술혁신은 배타적 권리에 의해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⁹⁰⁾ 연속적으로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의 어느 배타적 권리자가 자신의 기술혁신에 대한 후속이용을 허락하지 않게 되면 기술혁신에 정체가 유발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학술·연구 기관으로서 영리적 성격을 조금도 가지지 않은 것을 찾기가 쉽지 않고

89) 예를 들면, 타자기 산업에서는 키보드에 타이피스트들을 교육시키는 비용 때문에 다른 디자인보다 열악하다고 하는 QWERTY를 한 세기 넘게 사용해 왔다.

90) 점증적·연속적·누적적 기술혁신을 배타적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는 다음 문헌에 설명되어 있다.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pp.96-98, 293-295.; James Bessen and Eric Maskin, *Sequential Innovation, Patents, and Imitation*,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No. 00-01, January 2000.

대부분이 영리적 성격을 일부나마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VI. 결론

현행 저작권법과 유럽지침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강력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에 의한 추가 보호를 하는 것은 사실 유럽이 데이터베이스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소유권적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지 않고 계약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되어 적절하지 않다.

배타적 권리의 설정에 의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배타적 소유권체제는 한결같이 후속기술혁신 과정에 과도하게 높은 사회적 비용을 부과한다. 배타적 권리로 ‘작은 기술혁신’을 보호하게 되면 마치 주요한 기술혁신을 이룬 것처럼 보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⁹¹⁾ 이러한 체제는 수많은 진입장벽과 복잡한 ‘소유권의 망’을 구성하게 된다. 한마디로 소유권적 체제는 연속적·점증적 기술혁신 과정에서 후속기술혁신을 저해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와 그 시장 및 발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복제에 취약하다. 그 제작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복제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은 점증적·연속적·누적적으로 이루어진다. 데이터베이스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률체제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및 그 발전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연속적 기술혁신에서 선행기술혁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후속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주제어: 데이터베이스지침, 창작성(originality), 노동이론, 유인이론, 지적창작이론, Feist 사건, 이마의 땀 기준, 기술적 보호수단, 강제실시제도, 편집물, 소유권적 체제

91) Jerome H. Reichman, “Of Green Tulips and Legal Kudzu: Repackaging Rights in Subpatentable Innovation,” Rochelle Dreyfuss 외 2인 편집, *Expanding the Bounda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23-53.

<Abstract>

Copyright Protection of Databases in the EU and Korea

Daehwan Koo*

Information and databases are vital to science, the legal system, education and so forth.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ly immensely on unhindered access to databases. Important issues exist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f access to databases. For example, current attempts to protect database by exclusive proprietary rights, expanding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IP) protection to include uncopyrightable facts, will finally hinder the access to databases.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legislative direction that would provide limited protection of databases and a return on investment as an incentive to create databases. Thus, it tries to find a way to preclude essential scientific data from privatising.

This article provides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European Database Directive. By highlighting the similarity between, and problems of, the Directive and the current Copyright Act, the author tries to justify introduction of basic principles in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that is based on liability regime.

Key Words : European Database Directive, Originality, sweat of the brow, Feist case, Authorship, Substantiality, Data base Management System, liability regime.

* Assistant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